

서울특별시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15
----------	------

2017년 8월 3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 다.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가. 제안이유

- 탄천물재생센터는 강남구 등 4개구 2개시 발생 하수를 처리하는 물재생시설로 '87년 운영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업체 (주-탄천환경)에서 위탁 관리하여 왔으며 2017.12.31.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수질관리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지속적인 물재생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의회동의 절차의 특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 의회 동의 규정 신설('12.12.31.) 이전에 위탁사업을 개시하여 그동안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최초로 도래되는 재위탁시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17.7.13)

나. 주요내용

1) 사업 개요

- 위탁사무 : 물재생센터 운영 및 물재생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 (36개월)
- 소요예산 : 연 36,664,166천원 (월 3,055,347천원)_최근 3년

※ 최종 위탁금액은 계약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

- 수탁사 선정 : 공개경쟁입찰

2) 시설현황

- 위 치 : 강남구 개포로 625(강만구 일원동 580)
- 부지면적 : 393,000 m^2
- 시설용량 : 90만 m^3 /일
- 차집관로 : 97km(하천수 7개소)
- 처리구역 : 80.21 km^2
 - 강동·송파구(전역), 강남·서초구·과천시·하남시(일부)

3) 주요 위탁내용

-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하수 처리 및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4) 민간위탁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그간의 위탁경과 〉

- ◇ 탄천물재생센터 개원 : 1987. 12. 9
- ◇ 최초위탁(1차) : 2000.4.1. ~ 2002.12.31. {수탁업체 : (주)탄천환경}
- ◇ 재 계 약(2차) : 2003.1.1. ~ 2005.12.31. { “ } }
- ◇ 재 계 약(3차) : 2006.1.1. ~ 2008.12.31. { “ } }
- ◇ 재 계 약(4차) : 2009.1.1. ~ 2011.12.31. { “ } }
- ◇ 재 계 약(5차) : 2012.1.1. ~ 2014.12.31. { “ } }
- ◇ 재 계 약(6차) : 2015.1.1. ~ 2017.12.31. { “ } }

5)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물재생시설은 생활하수의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수질을 보전함으로써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환경 기초시설로
- 민간의 물재생센터 운영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영비 절감으로 경영합리화

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 물재생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74조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

○ 관리대행 운영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90.00점으로 환경부 지침의 개선대상 기준인 70점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며, 직영센터(평균 86.64)에 비해 운영성과가 우수하므로 민간위탁 제안

※ 「2016년 물재생센터 운영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7.03. 31)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리대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의3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의회 동의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해당 사무를 재위탁¹⁾ 또는 재계약²⁾ 하는 경우 매 4회 차마다 의회 동의를 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금년 7월,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7년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되, 부칙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점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민간위탁조례가 개정·시행('17.7.13.) 되면서,
-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2000.4월 이후 그동안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해왔기 때문에 개정된 민간위탁조례상 7년이 경과한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시점에 해당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1)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현황

- 탄천물재생센터는 서울시 4개 자치구, 경기도 2개 시 일부구역³⁾의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탄천물재생센터 현황

구분	내용
위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시설용량	90만 (ton/일)
운영방식	관리대행 (주식회사 탄천환경)
하수처리구역	80.21km ² (4개구 2개시) ·강동구·송파구 전역, 강남구·서초구(일부구역 제외) ·하남시(일부구역), 과천시(일부구역)
처리방법	·MLE(질소제거) ·응집약품투입(인제거) ·3차처리시설(MDF)

-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1997년 IMF사태 당시 공공부문의 저비용 고효율 체제전환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 당시 해당 센터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종업원 지주회사⁴⁾ 형식의 (주)탄천환경을 설립하고 서울시와 최초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0.4월 최초계약 이후 5차례의 재계약이 이루어졌음.

3) 강동구·송파구 전역 강남구·서초구(일부구역 제외), 하남시(일부구역), 과천시(일부구역)

4) 종업원 지주회사

- 민간위탁 참여 공무원 : 72명(당초) → 31명(현재)

- 자본금 : 2억원(보유주식 40,000주, 108명 보유)

* 공직유관 단체 지정으로 경영진 재산등록

[표 2]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추진 현황

구분	기간	관리대행사	계약방법
1차	2000.04. ~ 2002.12	(주)탄천환경	최초위탁 (수의계약-조례근거)
2차	2003.01. ~ 2005.12.	(주)탄천환경	재계약 (수의계약-조례근거)
3차	2006.01. ~ 2008.12	(주)탄천환경	''
4차	2009.01. ~ 2011.12	(주)탄천환경	''
5차	2012.01. ~ 2014.12	(주)탄천환경	''
6차	2015.01 ~ 2017.12	(주)탄천환경	''

- 한편, 서울시가 금회 관리대행코자 하는 탄천물재생센터의 사무내용은 [표 3]과 같고, 위탁기간은 2018.1~2020.12월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에 해당하는 연간 약 37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3]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사무내용

-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하수 처리 및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 관리대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상기 [표 3]의 사무내용을 살펴볼 때 공익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주체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①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고, ② 부분

적으로 공신력이 요구되나 관리대행에 큰 문제가 없으며, ③ 서울시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무에 해당하지만 시민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관리대행 방식으로의 추진은 현 여건에서는 최적의 방안이라 사료되고,

- 그동안 6차에 걸친 (주)탄천환경의 관리대행 실적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점과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최근 3년간 90점 이상의 탁월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표 4] 참조), 그리고 직영센터(평균 86.64)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표 5] 참조)에서 더욱 그러함.

[표 4] 탄천물재생센터 운영성과 목표대비 실적(최근 3년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평 균		93.43	92.61	90.00
대행업체(인력)	근무년수, 자격보유율	16.7	18.29	18.70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사용약품 절감율 에너지절감율	19.1	17.25	18.94
하수찌꺼기 및 재이용	소화조 운영효율 소화조 발생가스 이용률 하수찌꺼기 감량화 개선율	20.29	19.81	15.68
서비스 질	처리수 재이용률 탈수케익 함수율 계약방법 개선률	19.21	19.02	20.25
운영관리	처리수 재이용률 탁수케익 함수율 계약방법 개선률	18.13	18.24	16.43

[표 5] 물재생센터별 성과평가 결과('14 ~ '16)

평가 분야	물재생센터			
	중랑(직영)	난지(직영)	탄천(위탁)	서남(위탁)
평균점수(3년간 평균)	86.01	87.27	92.00	90.22

- 또한, 환경부의 '2013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557개소로 이 중 관리대행으로 운영·관리하는 시설이 2013년 기준 전체 대비 74.1%인 41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 환경부가 우리나라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영보다 관리대행 운영시 톤당 하수처리비용이 약 25.9원 저렴⁵⁾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관리대행 방식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관리대행 과정에서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위탁자와 피위탁자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 도입 시 재정·기술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체가 선정될 경우 운영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임.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수탁자 선정 건

- 2016.10월 (주)탄천환경과 (주)서남환경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⁶⁾ 동일한 수탁사와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자 본 동의안은 수탁자 선정을 기존의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있음.

5) 하수 1톤당 처리비용 :직영 195.3원, 공사·공단 139.9원, 민간 169.4원, BOD 1kg당 처리비용 :직영 1,261.8원, 공사·공단 935.7원, 민간 1191.7원, 공단·공사기업은 상대적으로 시설용량 50천톤/일 이상인 처리시설의 비율이 높아 톤당 하수처리단가가 저렴함.

6) 감사위원회(2016). 서남·탄천물재생센터 운영실태 감사 결과. 서울특별시

- 이처럼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할 경우, 민간의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경쟁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과 운영관리 및 고용의 탄력성이 제고되어 현실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⁷⁾해진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
- 그러나, 물재생센터의 운영 목표가 생산성이 아닌 공익성에 있다는 점에서 공개경쟁입찰 도입 시 계약기간(3년) 이후의 재계약을 담보할 수 없어 자칫 수탁업체가 단기 수익성에 치우칠 경우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 서울시가 2019년을 목표로 지금의 직영과 관리대행의 이원화된 체계를 공단설립을 통해 일원화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음의 사항들을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할 것으로 여겨짐.

가. 제도적 측면

-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14.5.15.개정)’ 발주방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관리대행 선정을 위한 발주방법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⁸⁾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조례의 경우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7) ㈜한국수도경영연구소(2015). 세종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세종특별자치시

8)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p.6 : ○ 발주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채택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례」 제8조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⁹⁾의 단서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으로서 시장이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가 (주)탄천환경을 대상으로 그동안 수의계약을 시행해 온 것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특별한 하자가 없다 할 것이며, 때문에 금회 동의안이 수탁자 선정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측면 보다 정책적·행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리라 여겨짐.

나. 행정적 측면

- 서울시는 '97년 국가 외환위기 당시 저비용·고효율 체제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에 참여한 퇴직 공무원들의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전직자에 대한 신분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 시장방침(하수67712-1544, 1999.11.30.)과 조례개정을 통해 퇴직 공무원이 종업원 지주회사로 설립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법적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근거할 때,

9)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생략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 경험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하고 시장이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 (주)탄천환경의 경우 설립당시 참여공무원이 72명이었고 현재도 43%인 31명(직원총수:14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립당시 서울시가 시장방침으로 약속한 사항이 행정신뢰 측면에서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이 점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새로운 수탁자에게 일정 범위(80% 이상)의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3년에 불과하여 새로운 수탁자가 정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승계할 가능성이 높고,
- 이로 인한 신분 불안정 문제가 대두되어 직원 사기 저하는 물론 운영 및 관리품질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더욱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서울시 행정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향후 서울시가 유사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의 반대를 위한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다. 비용적 측면

- 2014.10월 서울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탄천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 자료¹⁰⁾에 의하면 [표 6]과 같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기존 관리대행사업자가 아닌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직원이직¹¹⁾으로 인하여 업체

10) 한국산업관계연구원(2014).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

11)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업체가 변경된 사례를 살펴보면,
 - 기존 관리대행업체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1년 동안 운영하여 안정적인 근무형태를 지속하여 왔으나, 2011년 이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되면서 신규업체로 변경됨
 -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할 경우 업체는 낙찰을 위하여 예정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 감소분은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의 감소, 업무량의 증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¹²⁾을 추정하였을 때 다수 업체의 경쟁을 유도하여 관리대행비를 절감하는 효과보다 손실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공개경쟁입찰 추진에 따른 실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음.

[표 6] 관리대행비 절감효과 대비 이직비용 경제성 분석 결과

분석지표	판단기준	지표값	분석 결과
B/C Ratio	B/C > 1 : 관리대행업체 변경이 타당	0.90	관리대행업체 변경 타당성 없음 (기존 업체 재계약이 타당)

※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직원이직화 측면의 손실을 추정하여 분석
 ※ B(Benefit) : 편익 현재가(2,984,939천원)
 ※ C(Cost) : 비용현재가(3,334,476천원)

라. 공단화 추진 계획을 고려한 측면

- 서울시는 2019.1월을 목표로 현재 직영과 관리대행의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물재생센터를 공단 설립을 통해 일원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불과 1년여를 남겨 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경우 공단설립의 주체가 되어 특혜적 시비 논란이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공단설립 계획 자체의 재정비가 요구되어 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겠음.

등을 통하여 충당함

- 그 결과 정년 퇴직자를 제외한 인력의 25%가 이직한 것으로 조사됨.

12) 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연봉의 약 1.8배에서 약 2.5배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연봉의 약 2배 정도로 계산하고 있음(신인적자원관리, 이재훈, 이종준, 1998).

■ 종합의견

- 탄천물재생센터는 2000.4월 이후 현재까지 약 18년간 관리대행 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왔다는 점 에서 금회 관리대행 동의안의 취지와 타당성에는 적극 공감한다 할 것이나,
- 기존과 달리 수탁자 선정방식을 조례 단서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 이 아닌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법원칙에 근거하여 요구한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서는
- 물재생센터의 운영·관리가 공익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과 (주)탄천환 경의 탄생배경, 그리고 서울시가 2019년 공단화를 통한 물재생 센터 운영체제 일원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다양하게 고려 하여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여 겨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운영·관리 또는 기술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이현찬 의원)

답변) 기술적,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현 수탁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공개경쟁입찰 방식에서의 추진은 수의계약에 대한 사회적 여론, 감사위원회 지적 등에 따른 것으로 기존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문제는 없음.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질의) 2019.1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물재생센터 공단화와 관련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없는지? (주찬식, 유광상 의원)

답변) 공단화가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경우 실제 위탁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기존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아닌 신규로 수탁업체가 들어올 경우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임.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부대조건 :

첫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단설립 이전까지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
에 의거 기존과 같이 재계약을 추진하고,

둘째, 계약기간 내에 공단설립이 무산될 경우 공익시설인 물재생센터
의 향후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현재 이원화 체계인 서울시 물재
생센터를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

의안 번호	2015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탄천물재생센터는 강남구 등 4개구 2개시 발생 하수를 처리하는 물재생시설로 '87년 운영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업체(주-탄천환경)에서 위탁 관리하여 왔으며 2017.12.31.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수질관리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지속적인 물재생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의회 동의 규정 신설('12.12.31.) 이전에 위탁사업을 개시하여 그동안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최초로 도래되는 재위탁시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17.7.13)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사무 : 물재생센터 운영 및 물재생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 (36개월)
- 소요예산 : 연 36,664,166천원 (월 3,055,347천원)_최근 3년

※ 최종 위탁금액은 계약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

- 수탁사 선정 : 공개경쟁입찰

나. 시설현황

- 위 치 : 강남구 개포로 625(강만구 일원동 580)
- 부지면적 : 393,000m²
- 시설용량 : 90만m³/일
- 차집관로 : 97km(하천수 7개소)
- 처리구역 : 80.21km²
 - 강동·송파구(전역), 강남·서초구·과천시·하남시(일부)

다. 주요 위탁내용

-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하수 처리 및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그간의 위탁경과 〉

◇탄천물재생센터 개원 : 1987. 12. 9
◇최초위탁(1차) : 2000.4.1. ~ 2002.12.31. [수탁업체 : (주)탄천환경]
◇재 계 약(2차) : 2003.1.1. ~ 2005.12.31. [“]
◇재 계 약(3차) : 2006.1.1. ~ 2008.12.31. [“]
◇재 계 약(4차) : 2009.1.1. ~ 2011.12.31. [“]
◇재 계 약(5차) : 2012.1.1. ~ 2014.12.31. [“]
◇재 계 약(6차) : 2015.1.1. ~ 2017.12.31. [“]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물재생시설은 생활하수의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수질을 보전함으로써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로
- 민간의 물재생센터 운영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영비 절감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 물재생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74조

▶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관리대행 운영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90.00점으로 환경부 지침의 개선대상 기준인 70점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며,
직영센터(평균 86.64)에 비해 운영성과가 우수하므로 민간위탁 제안
- ※ 「2016년 물재생센터 운영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7. 3. 31)
- ※ 작성자 : 물재생시설과 위탁관리팀 김명훈(☎2133-3843)

탄천물재생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민간위탁 성과보고서

□ 민간위탁사업 개요

○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 ◇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 제6조 제2호 :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 제7조 제1항 :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을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추진경과

- 탄천물재생센터 개원 : 1987. 12. 9
- 최초위탁(1차) : 2000.4.1. ~ 2002.12.31. [수탁업체 : (주)탄천환경]
- 재 계 약(2차) : 2003.1.1. ~ 2005.12.31. [“]
- 재 계 약(3차) : 2006.1.1. ~ 2008.12.31. [“]
- 재 계 약(4차) : 2009.1.1. ~ 2011.12.31. [“]
- 재 계 약(5차) : 2012.1.1. ~ 2014.12.31. [“]
- 재 계 약(6차) : 2015.1.1. ~ 2017.12.31. [“]

○ 사업내용

- 위탁사무 : 물재생센터 운영 및 물재생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
 - ◇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
 - ◇ 하수 처리 및 처리수의 법정수질 준수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 (36개월)

○ 사업현황

- 시설현황

- ◇ 위치 : 강남구 개포로 625(강만구 일원동 580)
- ◇ 부지면적 : 393,000 m^2
- ◇ 시설용량 : 90만 m^3 /일
- ◇ 차집관로 : 97km(하천수 7개소)
- ◇ 처리구역 : 80.21 km^2

[강동·송파구(전역), 강남·서초구·과천시·하남시(일부)]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년도별	사업예산			비 고
	계	정산비	비정산비	
2014년	35,378	25,389	9,989	정산비 : 시설비 비정산비 : 인건비
2015년	35,731	25,690	10,041	
2016년	38,883	28,566	10,317	

※ 2017년 예산 : 36,637(정산비 26,232, 비정산비 10,405)

- 운영현황

- ◇ 하수(슬러지) 처리

(단위: m^3)

구 분 년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하수 처리 (일평균)	271,186,697 (742,976)	267,778,356 (733,639)	268,653,985 (734,027)	하수 : 연평균
슬러지 처리 (일평균)	109,500 (300)	110,230 (302)	111,690 (306)	슬러지: 연평균

- ◇ 수질관리

(단위 : mg/L, 총대장균군수 : 개/ml)

구 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2014년	유 입	122.9	65.2	123.5	34.2	3.6	142,008
	방 류	6.4	9.3	3.1	12.3	0.4	830
2015년	유 입	128.3	62.2	125.5	35.9	3.8	126,431
	방 류	5.3	8.5	3.1	11.3	0.4	1,060
2016년	유 입	129.3	64.2	120.8	36.8	3.9	144,481
	방 류	5.2	7.7	2.4	11.7	0.3	841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목표 : 90점 이상(탁월)
 - ◇ 평가내용 : 수탁업무 이행 적정성(효율성)
 - ◇ 평가기준 : 환경부 지표(31개), 서울시 자체지표(8개)
 - 환경부 지표 : 4개 분야 31개(하수처리 효율, 민원처리율 등)
 - 자체지표 : 1개 분야 8개(슬러지처리시설 가동률, 계약방법 개선률 등)
 - ◇ 시행근거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4(매 1년마다 성과평가 실시)

○ 추진실적

- 운영성과 목표(계획) 대비 실적(최근 3년간)

구 분	목 표	실 적	달 성 율
2014년	90점 이상	93.4점	100%
2015년	90점 이상	92.6점	100%
2016년	90점 이상	90.0점	100%

- 세부실적 내역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평 균		93.43	92.61	90.00
대행업체(인력)	근무년수, 자격보유율	16.7	18.29	18.70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사용약품 절감율 에너지절감율	19.1	17.25	18.94
하수찌꺼기 및 재이용	소화조 운영효율 소화조 발생가스 이용율 하수찌꺼기 감량화 개선율	20.29	19.81	15.68
서비스 질	처리수 재이용률 탁수케익 함수율 계약방법 개선률	19.21	19.02	20.25
운영관리	처리수 재이용률 탁수케익 함수율 계약방법 개선률	18.13	18.24	16.43

- 위탁비(협약액) 집행실적

구 분	예 산(백만원)	집 행(백만원)	집행율(%)	비 고
2014년	35,378	32,385	91.5	
2015년	35,731	32,468	90.9	
2016년 (공공운영비)	24,800 (14,083)	23,106	93.2	공공운영비 "시"에서 집행

□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

○ 성과평가 결과

- 운영실적 평가결과 3년간 평균점수가 90.00점 이상(탁월)으로 성과목표(90.00)초과는 물론 환경부 지침의 개선대상 기준인 70점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어 전체적으로 운영성과가 탁월함.

또한 직영센터(평균 86.64)에 비해 우수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됨.

[센터별 성과평가 결과('14~'16)]

평가분야	직영 및 전체위탁			
	중랑(직영)	난지(직영)	탄천(위탁)	서남(위탁)
평균점수(3년간 평균)	86.01	87.27	92.00	90.22

○ 향후계획(추진방향)

- 민간위탁 지속적 추진
 - ◇ 운영성과 평가결과 직영센터 보다 민간위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추진
- 운영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 개선방안 모색
 - ◇ 부진분야 개선대책 수립 시행
 - ◇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시행
 - ◇ 평가결과(위탁) 및 개선 건의사항 환경부 제출
- 차기(2018년) 관리대행업자 선정 : 공개경쟁입찰 시행
 - ◇ 보다 기술력있는 업체의 참여로 재계약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경영 합리화 등 효율적 운영 도모